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세 범칙사건의 압수물건에 대한 인계 주체 변경〉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126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지방세 범칙사건의 압수물건에 대한 인계 주체 변경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황운하의원 등 14인
2. 제안연월일 : 2025. 8. 12.
3. 회부연월일 : 2025. 8.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유자 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1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 부여 등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 이를 인계하는 대상을 검사를 포함하고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 및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지방세 범칙사건의 압수물건에 대한 인계 주체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시 통고처분 불이행을 이유로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를 현행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 ¹⁾ 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u> 인계하여야 한다.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 ----- ----- ----- <u>관할 수사기관에</u>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5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u>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u>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 ----- <u>관할 수사기관에</u> ----- ----- ----- <u>관할 수사기관에</u> -----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24조(고발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받기를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 제외 및 새로운 수사기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검찰개혁 4법’²⁾의 개정에 동반되는 것으로, 지방세 분야 범칙사건 조사 절차에 검경수사권 조정 및 수사체계 변화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해당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수사절차법안」, 「공소청법안」, 「형사소송법안」의 의결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안이 의결되는 진행사항에 맞추어 반영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33

2)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